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21

2026년 3월 13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 정 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박경환)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

○ 세입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함(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회계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제출기관	검토의견	검토결과
강남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고질 체납자 상담, 징수전담반 운영 등 체납 관리와 징수 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방향 제시, 점검·분석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반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과 일치시키고, 세입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 분야 점검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추상적이거나 관리직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는 이해충돌 및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2024. 4월~11월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 분야 점검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 통보 및 자체 감·조사 실시 요청('25. 2월)
- 서울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조사 실시 : 2025. 3. 4. ~ 7. 10.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담당관-10367, '25. 7. 11.)
  · 과장급(4급) 관리직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 조례상 '납부독려' 문언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맞추고, 「지속적인 납부독려」에 대한 유형과 기준 마련

○ 세입징수포상금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지급대상은 "특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징수포상금 대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되, 체납액의 직접 징수 등 특별 공적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본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1. 최근 3년 체납시세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단위: 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437,363,150	491,387,540	585,520,110
과장(4급)-1명	2,815,010※	5,908,500	6,774,110
팀장(5급)-5명	25,377,700	27,705,740	31,570,570
직원-28명	192,355,140	198,983,110	213,207,530
시간선택임기제-6명	216,815,300	258,790,190	333,967,900

※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과장 포상금 미지급

※ 2개월에 1회 지급(일반직은 인당 월 50만원 상당/월 지급한도 125만원), 시간선택임기제는 인당 월 300만원 상당/월 지급한도 없음, 건당 3천만원 한도)

가. 세부내용 검토

1) 조문 정비의 적정성(안 제2조제2항)

○ 안 제2조제2항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현행 “납부독려”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같이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하고, 2022년 제4조가 삭제된 관련 인용 조문을 본 개정안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조문을 통일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 “납부독려”로만 규정하는 것은 단순 독촉 행위나 체납처분도 포상금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바, “지속적인”이라는 요건을 명문화하여 반복적·적극적 노력이 요구됨을 조문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 ----------. ---------- ---------- ---------- ---------.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1. ----------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 ----------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

○ 다만, ‘지속성’의 판단기준을 내부지침 또는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지속적인 납부독려’의 범위가 모호하여 세입징수포상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바, 구체적 기준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운영이 요구됨.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사를 위해 위원장인 ‘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2조제4항)

○ 현행 조례는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징수 활동은 주로 6급(시는 6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7급)이하 공무원(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3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지급대상) ④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에게---------.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부분 과장급(4급 또는 5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세입징수포상금 제도가 실질적 징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사례 : 표 2 참조

○ 과장급 이상 관리직은 조직의 총괄·관리 기능으로, 직접적 징수 활동과는 구분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 및 제도 남용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나, '직접 징수', '구체적 체납 사건 특정', '위원회 공적 인정' 등 예외 조항은 구체적 기준을 수립 후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타 시·도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비교 분석표〉

연번	시도별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한도		비 고
				건당	월	
1	서 울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25만원	국장급(시는 3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전액정리보류 전담 체납 징수	4.3%	3,000만원	없음	
2	인 천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5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3	경 기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5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정리보류액 잔여시표 1~4년이상	6~2%	100만원	500만원	
4	부 산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5	대 구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6	대 전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7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7	광 주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8	울 산	지난년도 체납액 1~2년 이상	1,5%	30만원	100만원 (※분기30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9	세 종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분기 300만원 (※ 임기제 50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10	강 원	지난년도 체납액	2%	50만원	2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정리보류 체납액	3%			
11	충 북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50만원	200만원	과장급(도는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12	충 남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1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3	전 북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4	전 남	지난년도 체납액 1년~3년 이상 (※1천만원 초과 체납액 징수)	1,3,5%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임기제 30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15	경 북	지난년도 체납액 1년~3년 이상	1,3,5%	30만원	100만원 (※ 임기제 3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6	경 남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4급 이상 관리직 제외 (단, 예외규정 있음)
17	제 주	지난년도 체납액 1~3년 이상	1,3,5%	30만원	분기 30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제외
		정리보류 체납액	5%	3,000만원	없음	

나.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포상금 지급 제외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문언 정비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예외 인정 기준, 지속성 판단 기준,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21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을 제외하고(안 제2조제4항)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회계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제출기관	검토의견	검토결과
강남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고질 체납자 상담, 징수전담반 운영 등 체납 관리와 징수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방향제시, 점검·분석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강경일 (☎ 2133-347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를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로, “‘체납액’”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장급(시는 3급”을 “과장급(시는 4급”으로, “4급”을 “5급”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그징수액”을 “그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매분기초”를 “매분기 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 ---------- “체납액”----------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	1. ---------- ----------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우	납부독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과장급(시는 4급---------- 5급 ---------- 공무원에게----------.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1. ---------- 그 징수액----------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	9. ----------

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1,000분의 43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 제3조---------- ---. ----------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 ①·② (생 략)	제9조(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 ---------- 매분기 초----------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과장급 관리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된 포상금은 징수담당자에게 배정되므로 서울시 예산의 증감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38세금징수과 강경일(2133-3471)